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35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138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3

I. 개요

1.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3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9.

(3) 회 부 일 : 2024. 12. 0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 농업, 임업은 소규모, 고령화, 영세농으로 요약되며 농가나 임가는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부는 농림업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가, 임가에 대한 소득이전 기능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

해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음. 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인한 생산 차질, 수입 농산품 목 증가로 인한 소비 급감 등, 우리 농가와 임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감소와 부채 및 가계지출의 증가는 생활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그에 따라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 임가들도 증가하고 있음.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제공 등 조세지원 제도는 수혜자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으로서 이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제도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가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농림어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농림어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2.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13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03.
- (3) 회 부 일 : 2024. 12. 0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지역 농림어업인 대다수는 지역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법인으로부터 상호금융 등 사업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음. 즉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주의적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연대하고 협력함.

최근 농어촌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조합원의 연체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조합법인의 연체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제 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나아가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등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한도: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 비과세 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 비과세 기한: - <u>2028년 12월 31일까지(이만희·주철현 의원안)</u>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조합원·회원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 한도: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 비과세 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 비과세 기한: - <u>2028년 12월 31일까지(이만희·주철현 의원안)</u>

* 이만희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35), 이만희의원안 2024. 12. 3. 발의(의안번호 6138),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조합 등¹⁾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

1)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8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83조의3).

장함으로써 해당 조합 등의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이하 “조합원등”이라 함)인 농어민·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하고,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로 저율 분리과세 할 예정임.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조합 등에 대한 조합원등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용고배당소득), 20세 이상 조합원등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6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됨.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1996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11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 도입 당시 200만원에서 1987년 500만원, 1992년 1,000만원, 2024년 2,000만원까지 증액되었고,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부터 100만원 한도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까지 증액되었음.

또한, 2020년 세법개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 제한조항²⁾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3,760억원의 실적을 보였으나, 2023년 말 세법개정으로 출자금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개정 되면서 2023년에는 7,09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 이후에는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전망)	2025(전망)
감면액	3,760	3,724	7,094	12,356	13,716

* 조특법 제88조의5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및 제89조의3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농어민의 안정적인 재산형성 지원과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 등을 위해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농어민의 수입은 기후, 계절, 시장수요 및 공급 등에 따라 불규칙적인 측면이 있고 농어가 가구당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0~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³⁾)으로 농어민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저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2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⁴⁾에서는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의 3/4정도가 저소득층에 주어지고 있고,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

셋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될 경우 조합원 등의 자금이탈을 유발하여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등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져 조합원등이 추가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61.

4)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2022. 9.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합 등 회원에 대해 소득·자산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동 과세특례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⁵⁾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소득 요건 등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자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⁶⁾에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한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둘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수신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기능하는 측면은 있으나, 재정여건 상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고 타금융기관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5) 2023년 실적기준 동 과세특례가 저축지원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규모임

6)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0